

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제도 안내

평가대상

감리인 등록을 하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감리인

평가주기

2년 ※ 단, 평가주기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평가 가능

평가등급

5등급(매우우수, 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) ※ “미흡” 등급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시정조치 요구 가능

평가실시기관

한국환경공단(이하 “공단”)

※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, 환경부고시 제2021-228호

평가 진행 절차



평가대상감리인 확인사항

1 평가 공고 확인

석면관리종합정보망(<https://asbestos.me.go.kr>) : [석면관리종합정보망]-[고객마당]-[공지사항]

2 감리인 평가시스템 회원가입

- ① 석면관리종합정보망 → 우측 상단 **감리인평가시스템이동** 버튼 클릭
- ② [감리인평가시스템]-[고객마당]-[공지사항]-[석면관리종합정보망 감리인평가시스템 회원가입 안내]
- ③ (첨부파일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→ 작성 → 메일 송부<asbestos2021@keco.or.kr>
※ 계정발급은 약 3~4일 소요 되며, 초기비밀번호 등 이메일로 회신 될 예정

3 ★방문일정 및 평가대상 확인

- ① 감리인평가시스템 계정 로그인 후 메인화면 ★“방문평가일” 확인
- ② [감리인평가시스템] - [평가정보조회] - [평가대상 조회]

4 평가자료 업로드 확인

- ① [감리인평가시스템] - [평가정보 조회] - [평가대상 조회] - 평가대상 감리실적 클릭
- ② 입력된 자료 적절성 확인(평가계획 통보일 14일 이내)
※ 입력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 평가대상 실적 관할 지자체에 자료 보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

5 방문평가 자료준비

- ① ★필요서류 준비(뒷면 자가체크리스트 참고)
- ② 「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고시」[별표3]* 내 세부평가항목 확인
*[감리인평가시스템] - [고객마당] - [자료실] - [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]

6 평가결과 확인

[감리인평가시스템] - [평가정보 조회] - [평가결과 확인]

7 이의신청 (필요시)

평가등급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(감리인평가시스템)
※ 이의신청서 양식:「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[별지 3]

8 최종등급 공개

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